

대중민주당 강령

- 목 차 -

- | | |
|----------|-------|
| 1. 정치 | 5. 통일 |
| 2. 경제 | 6. 복지 |
| 3. 지방분권 | 7. 교육 |
| 4. 외교·안보 | |

1. 정치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는 대중중심의 정당을 구현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포용적 정치, 권력기관의 개혁, 공직사회의 혁신, 당내 민주주의 실현,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등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한다.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고 국익을 우선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 여성,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포용적 정치를 구현한다. 중앙당중심의 정당구조를 벗어나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분권화된 정당체계를 지향한다. 토론을 통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정치문화를 형성한다.

국가 권력기관인 검찰, 군,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권력기관의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공무원이 청렴하고 능력 있도록 공직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혁신을 도모한다. 공무원의 개방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국민과 당원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을 해결한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조성하여 상생의 정치를 추구하며 어떤 극단의 정치도 배격한다.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한다. 당원이 당의 공천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당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민과 당원들의 민주적역량강화를 위한 생애 주기별 시민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국민들이 당과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한다.

2. 경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용성장,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산업, 경제민주화, 국가의 책무, 국민 주거권, 조세 정의, 과학기술, 기후·에너지 문제 등을 모색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여 경제 성장의 발전과 혜택을 국민 모두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금융·부동산 등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포용 성장을 통해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의 경제적 생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여건 형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경쟁의 기회를 보장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포용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배분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추진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민·중산층의 고용

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실직·은퇴·폐업 등에 대비 사회 안정망 구축을 강화해 나간다.

국가 책무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한다.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 주거권을 보장한다. 주거권은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공동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농어촌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농수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농수축협의 유통구조,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식량자급과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계층·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기초과학·산업기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기후·에너지·자원 문제 등 다양하게 직면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한다. 과학기술인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창업을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여, 신기술 규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규제개선에 앞장선다.

자연상태계의 회복과 보존을 위해 ‘기후·에너지’ 문제에 앞장선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에너지의 토대가 되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시장기능과 정책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에 노력한다. 아울러, 자원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추어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산업의 발굴과 투자에 앞장선다.

3.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폭넓게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발전 역량강화, 지방자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4. 외교·안보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방개혁 추진을 통하여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혁신적인 병영환경을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불안정한 남북문제를 타개한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한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병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5. 통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남북 관계를 지향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남북 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4 선언,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합의 사항을 존중·계승하고 이를 적극 이행한

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구축을 위해 지속 추진한다.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통합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간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평화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구축 등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6. 복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전 생애에 걸친 단절 없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소득·건강·주거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소득보장·건강보장·노후보장을 기본 축으로 전 생애 과정에서 단절 없는 맞춤형 기본생활보장 정책과 출생에서 노후까지 실효성 있는 전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건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등 질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의 권리 실현과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한다.

활기찬 노년과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노인의 건강과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장애인 자활지원과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등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주민권리를 보장한다.

7. 교육

교육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 실현을 추구한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서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저출생의 원인인 육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아울러, 사교육 부담 없는 책임교육 실현과 대학 교육 대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추구한다.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해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지속이 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전 생애 전 국민이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한다.



대중민주당 당헌

당헌 전문

대중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 모두가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을 지향한다.

또한 거대정당에 의해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안보를 지켜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대중민주당’이라 하고, 약칭은 ‘대중당’라 한다.

제2조(목적) 대중민주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 ② 대중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 ③ 대중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 ④ 대중민주당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이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 ② 누구도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 ⑤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비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입당과 탈당은 자유에 따르며 당원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3장 조직

제1절 구성원리

제6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 청년 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아야 한다.

②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누구나 당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제2절 당원대회

제7조(구성) ① 당원대회는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 대회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③ 의장단은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④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⑤ 당원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지위와 권한) ① 당원대회는 우리 당의 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
2.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3. 강령과 당헌의 개정
4. 대표의 선출
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및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의 선출
6.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제9조(소집 등) ① 당원대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당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당원

대회이장이 상임중앙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 ③ 당원대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당원대회는 2년마다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당원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임시당원대회는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원대회이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⑦ 당원대회 소집은 당원대회이장이 당원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 한다.
- ⑧ 온라인 서명 등 전자서명 의결은 당규로 정한다.
- ⑨ 당원대회 소집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10조(대의원대회) ①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의결기구이다.

- ② 대의원대회는 당원 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이다.
- ③ 대의원대회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대의원 3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대회의 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4. 공동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선출
5.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 제13조(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중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 ④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전국위원회

-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원협의회 대표,
- ③ 전국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시 까지로 한다)
- ④ 전국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당헌, 당규의 해석
4.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5. 광역시·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6. 광역시·도당 사고 당부 지정
7. 분기별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의결
8. 부문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9. 부대표의 승인 및 해임
10. 전국사무처장의 임면

11. 당 대의원대회 및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2.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대회 및 대의원대회에
부의 할 수 있는 권한
13. 정책위원회의장과 정책위원의 추천
14. 정책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의 심의·의결
1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16조(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공동대표 2인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17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들이 소집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재의요구)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 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절 상임중앙위원회

제18조(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0인 이내 로 구성되는 상임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중앙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대의원회의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2. 시·도당 위원장
3. 당 사무총장
4.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제19조(기능) ① 상임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4.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5.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6. 전당대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7.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처리

제20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중앙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연 4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중앙위원회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중앙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로 한다.

제6절 당대표와 부대표 및 사무총장, 전국지역위원장

제21조 ① 당에는 당대표 및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② 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2.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중앙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진행한다.
4. 부대표 추천 및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5. 시·도당 위원장 추천 및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6.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

③ 당대표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초대 당대표는 창당 전당대회 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 추대하여 선출한다.

⑤ 당대표 임기 중 궐위가 생긴 경우 상임중앙위원회는 차기 당대표 선출 전까지 권한을 대행할 임시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⑥ 당대표의 임기 종료 후에도 결원이 있는 경우 상임중앙위원회는 차기 당대표선출 전까지 권한을 대행할 임시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부대표 및 사무총장) ① 당에는 부대표 2인을 둔다.

- ② 부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당대표의 당무 집행 보좌
 - 2. 당대표 궐위 시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임시 당대표 선출 시까지 권한을 대행
 -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 ③ 부대표는 당대표가 지명하고 상임중앙위원회가 승인하며 부대표의 임기는 당대표의 임기와 같이 한다.
- ④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 한다.

- 제2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위원은 2년의 임기로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2년의 임기로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 제25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둔다.
 -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④ 시·도당 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⑤ 시·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⑥ 시·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 ⑦ 시·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⑧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당원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 여부와 선출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 ⑨ 시·도당위원회의 운영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상임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원모임

- 제27조(설치)** ① 시·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둔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다.
- ② 시·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공직선거

제28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대중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가 추천한다.

- ②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상임중앙위원회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등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④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제3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 포함)에서 지역 및 지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후,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상임중앙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추천한다.

② 중앙당 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상임중앙위원회의에 재의 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당해 선거의 공천심사위원회 및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할 수 있다.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소환

제31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대의원대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한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2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33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 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재정배분 원칙) 당의 재정은 전국당과 지역당의 균형 및 풀뿌리 당원 활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은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의원총회

제36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38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

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9장 정책위원회

제40조(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외인사는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1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6. 당원발안 심사와 당원토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42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과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투표), 출석(투표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등은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광역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별도로 청산한다.

④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